

■ 일반공급 일정

일반공급	구분	일시	신청방법	신청장소
	1순위 청약 해당지역	2022년 7월 05일(화) (09:00 ~ 17:30)	인터넷 청약 (PC, 스마트폰)	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: www.applyhome.co.kr 스마트폰 : 청약Home앱
1순위 청약 기타지역	2022년 7월 06일(수) (09:00 ~ 17:30)			
2순위 청약	2022년 7월 07일(목) (09:00 ~ 17:30)			
당첨자 발표	2022년 7월 13일(수)		-	청약Home 홈페이지 개별조회

■ 일반공급 공통사항

신청 자격요건	신청자격			
	거주구분	순위	주택형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(2021.06.24)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(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)를 대상으로 주택형태별 청약 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. 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)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대주일 것 -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	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	전용 85㎡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자는 가점제/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, 주택소유에 따라 분류됩니다. (가점제 100%) - 가점제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[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)]에 속한 자 - 추첨제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[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)]에 속한 자 ※ 단,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. (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: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,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: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(전환)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,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	
		1순위	전용 85㎡초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약자는 가점제/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, 주택소유에 따라 분류됨: 가점제 50% / 추첨제 50% - 가점제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[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)]에 속한 자 - 추첨제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[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)]에 속한 자 ※ 단,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. (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 ※ "보양권 등"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(서약)불가 ※ 가점제(50%) / 추첨제(50%)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,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※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: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,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.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%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(분양권등 포함)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[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)]에 속한 자 2. 나머지 25%의 주택(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)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(분양권등 포함)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[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)]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(기존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)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: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: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, 납입금액이 지역별/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: 85㎡ 초과 주택형 -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㎡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(전환)한 자 중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이상이고,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③ 청약저축 :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/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(전환)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,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/면적별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자
		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. (2순위 청약 가능) - 세대주가 아닌 자 -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(전지역 해당, 모든 청약 대상자) -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-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예금, 부금 포함)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
		2순위	전 주택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·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(또함)에 가입한 자 • 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, 추첨제 100%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 •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예·부금 포함)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
청약제한 대상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(과거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)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2순위 청약불가 		

■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9조3항

구분	대구광역시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전용면적 85㎡ 이하	250만원	300만원	2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400만원	60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700만원	1,000만원	400만원
모든 면적	1,0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